

제 33 회 일본환경회의의 오키나와대회 선언

2016년 10월 23일
제 33 회 일본환경회의의 오키나와대회

제 33 회 일본환경회의의 오키나와대회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23일,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환경·평화·자치·인권~오키나와에서 미래를 연다’를 테마로, 국내·외에서 400명을 넘는 참가자가 있었으며, 전체회, 6개의 분과회를 통해 활발한 의논이 오고갔다.

1. ‘환경·평화·자치·인권’의 관점에서 본 오키나와의 현상태와 문제점

(환경)

오키나와에서는 1988년에 제 8 회, 1996년에 제 16 회의 일본환경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번으로 3 번째를 맞는다. 제 16 회 오키나와대회에서는, 군사기지의 존재와 공공투자에 의한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군사기지의 철거와 순환형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생산진흥책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오키나와에서는 더욱더 자연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있다. 정부가 강행하는 헤노코의 신기지건설, 타카에 헬리콥터 이착륙장건설에 의해, 오키나와 중에서도 특히 자연도가 높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오오무라완과 아열대의 삼림이 대규모로 파괴되고있다. 토사채굴장소가 되는 서일본 각지의 환경파괴도 중대하다. 기존의 미군기지에서부터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유해물질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등도, 오스프리의 강행배치를 시작으로 미군의 운용의 우선과 그 근거가 되는 배타적인 관리권의 존재에 의해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다.

(인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키나와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인권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군대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폭력장치이며, 미일지위협정에 의한 미군의 배타적인 관리권과 본래 그것을 규제해야하는 일본정부에 의한 무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고있다. 1992년 리오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는 양호한 환경을 누리고 그것을 차세대에 전해가는 것을 중요한 인권이라고 정했으나, 오키나와에서는 환경의 파괴에 의한 인권침해가 한층 더해지고, 또한 반대운동 탄압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 자의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알 권리와 참가권의 침해 등에 보다 주민의 목소리도 말살되고 있다.

(평화)

현재 오키나와는 미일동맹의 강화의 일환인 신기지건설, 2013년의 방위대요·중기방위력정비설계에 의한 류큐호의 방위체제의 강화, 그것에 따른 자위대배치 등, 미일 양정부에 의한 군사요새화의 한복판에 있다. 오키나와는 제 2 차세계대전에서 격심한 지상전을 경험하고, 그 후도 미국에 의한 직접통치 하에서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미군기지의 부담을 떠맡았다. 본토복귀 후도 그러한 구도가 유지·확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군대로는 평화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오키나와의 군대가 없는 평화로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실현되기에는 먼 상태이다. 그 뿐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격성을 가진 본격적인 군사기지의 건설이며, 헌법 9 조의 평화주의의 틀을 크게 넘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근거로 하는 지리적 우위론은 이미 완전히 과탄되었으며, 오히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군대에 의지하지 않는 지역 전체의 안전보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

(자치)

오키나와는, 정부의 구조적 폭력에 대해 확실한 반대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2013 년의 나카이마지사(당시)에 의한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승인은 명확한 공약위반이며, 오키나와는 올오키나와로 결집하여, 오나가 현정을 중심으로,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를 시작으로, 오키나와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개선을 외쳐왔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무시하는 정부의 행위는, 헌법 92 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이며, 오키나와의 자치권·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국가와 자치체를 대등협력관계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밑에서, 자치체의 의사에 반하고, 자치체는 물론 정부 조차도 규제할 수 없는 미군기지의 건설·제공을 강행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오키나와의 민의를 완전히 짓밟는 행정의 대응 뿐만아니라, 헤노코 매립 승인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시정지시 재판의 고등재판소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모든 자치체와 관련한 문제이다.

애초에 비식민지화의 과정에서 발전해온 인민의 자결권 (유엔헌장 제 1 조, 국제인권조약 1 조(사회권규약·자유권규약공통))은, 현재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의미에서의 마이널리티가 자기발전을 위해 집단으로 가지는 법적권리로써 국제인권법상 확립해있다.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류큐호로의 자위대배치는, 미군이용의 강제이며, 오키나와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군기지의 집중과 자위대배치에 의한 군사요새화는 오키나와의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있다. 특히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한 류큐호에서는 작은 섬들이 모인 도서지역에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있으며, 그곳에 거대한 군사기지를 떠안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환경과 공존해온 지역공동체와 자립적경제에 긴장을 낳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차별)

이러한 미군기지의 집중과 자위대배치에 의한 군사요새화, 그것에 의한 주민의 인권의 침해, 자치, 민주주의의 부재는 류큐처분 이래 쌓여온 역사적인 구조적차별상에 존재하는 것이며 한시라도 빠른 해소는 일본 전체의 긴급한 과제이다. 또한 본 대회에서는 독자의 문화를 가지는 오키나와가 받아들인 류큐처분 이래의 역사적 부정의 (식민지화)의 문제, 더하여 토지·영토·자원에 대한 권리가 명확히 평가된 2007 년의 유엔원주민족권리선언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의논되었다. 이 문제는 유엔에 있어서 일정 의논이 이루어진 경과가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문제이며, 앞으로 일본의 근현대사를 검증하며 일본전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2 방사능공해 및 원자력발전소 이재민의 현황과 정부의 이재민 지원·원자력 정책의 문제점

오키나와에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부터, 방사능공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다수의 이재민이 피난해왔다. 이러한 피난자의 다수는 어려운 가정환경·경제환경 속에, 특히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키나와까지 피난해왔다. 본 대회에서도 이러한 이재민이 다수 참가하여 각각이 놓인 궁핍한 현상을 호소한 것을 우리들은 중대하게 받아들여야한다.

동일본 대지진·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5 년이 경과한 현재도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완전히는 수습되지 않은채,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피난생활을 하고있다. 정부는 원자력긴급사태선언을 원인으로, 연간 20 밀리시버트를 피난지시의 기준으로 하여 방사선장애방지법 및 원자로 등

규제법에 기반한 연간 1 밀리시버트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도 피난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 피난지시해제에 의한 주민의 귀환과 배상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선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은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인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방사능공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이재민의 피난 선택은 피난의 권리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피난에 의해 생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재민과 방사능공해 이재민의 생존권의 회복이 급무이며, 장기대피를 포함한 피난자의 다양한 선택의 보장 등 주민의 건강·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를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쿠시마의 사고에 의해, 많은 주민이 피난자, 체재자를 묻지 않고, 고향의 상실·변모를 포함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많은 이재민이 소송에서 도쿄전력과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나며, 광범위한 시민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재가동, 신증설, 원전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민족을 포함한 주변지역주민의 인권침해와 환경오염의 리스크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절대로 용서되어서는 안된다.

3 한명 한명이 소중히 다뤄지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회복한다.

위의 공통되는 것은,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일부의 희생, 버려지는 것이 공공연하고, 게다가 그것이 제도화, 구조화되고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전후 일본의 시민사회가 일본국 헌법 아래에서 키워온 ‘환경·평화·자치·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 그리고 이것들을 지탱하는 ‘개인의 존엄’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며, 안심·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파괴·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이, 현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의 중요한 책임이다.

본 대회의 의논점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1 정부는 오키나와의 민의를 존중하고, 해노코신기지건설, 타카에 헬기이착륙장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있는 미군기지로부터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하며, 현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행된 오스프리배치의 철회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불리는 후텐마기지의 즉각폐쇄를 미국에게 요구하는 등, 주민의 권리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한 최고재판소는, 헌법 92 조에 규정된 자치권의 보장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정부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회피하는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하고, 미군의 원상회복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미군기지에서의 유래하는 것이 의심되는 환경파괴·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대응을 미일합동위원회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닌, 지역자치체나 시민단체의 출입조사권을 명기해야 한다. 과거에 반환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염상황에 관한 가능한만큼의 정보공개를 이행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3 정부는 환경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접근권과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 있어서 참가권의 충실을 시작으로 한, 환경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민주적 과정에 의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SLAPP 소송을 방지하는 대책도 검토해야만 한다.

4 류큐호로의 자위대배치는, 안보법제하 전수방위의 틀을 넘은 본격적인 군사기지화이며, 지역의 환경과 자치,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것이다. 생활을 기축으로 하는 민간교류의 촉진에 의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류큐호 주민의 역사적인 교훈이며, 정부는 류큐호로의 자위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5 정부는 방사능오염을 명확한 공해로 명하고 포괄적인 역학조사, 건강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의 실태를 파악해야한다. 또한, 의료·의료비의 급부, 주택지원계속·확대 등, 생존권을 존중하기 위한 시책을 지급히 확충해야한다. 또한 이재민이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하기위해 일어나며, 광범한 시민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고있다.
- 6 정부는 새로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원전재가동, 신증설, 원전수출정책을 즉각 중지해야하며, 기존의 원전도 폐지하여 탈원전을 구상해야한다.
7. 시민과 전문가 등이 각각의 입장에서 경험교류, 의견교환·의논 등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한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것에 의해, 한사람한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국내적·국제적 레벨에서의 사회적연대를 깊게하는 것, 특히 앞으로의 시대를 맡게 될 젊은 세대의 협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